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
- 「제101회 전국체전」의 준비와 예산확보, 행사기획, 시설확충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및 한시정원을 증원하며
-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 - 가. 1,642명 → 1,650명(+8명)
 - 집행기관 : 1,614명 → 1,622명(+8명)
 - 의회사무기구 : 28명(변동없음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별표 3)
 - 가. 정원 총계 : 1,642명 → 1,650명(+8명)

- 사회복지 인력 확충 : +4명
-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확충 : +1명
- 인구정책 전담인력 확충 : +1명
- 전국체전 추진인력 확충 : +2명

나. 일반직 계 : 1,603명 → 1,612명(+9명)

- 5급 : +2명
- 6급이하 : +7명

다. 연구직 계 : 4명 → 3명(△1명)

○ 한시 정원표 (안 별표 4)

가. 정원 총계 : 3명

나. 일반직 계 : 3명

- 5급 : 1명
- 6급이하 : 2명

다. 존속기한 : 2020년 5월 31일까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 - 정원 순증에 따른 연간추계 소요인건비 : 3,468,131천원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면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전국체전추진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『제101회 전국체전』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추진하고,
-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정책 추진 필수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